(가칭) 선원 협산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안

- (가칭)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칭)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의 최초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21년 05월 10일(월요일)입니다.
  ※신고번호 :2021-허가민원과-지역주택조합모집-2
- (가칭)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상(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산 96-1번지 일원)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진행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추진위원회	상 호	선원협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정연정)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50, 4층 (화장동)
	고유번호	345-80-01845

2. 업무대행사의 성명 및 주소

업무대행사	상 호	인강주택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황기)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50, 3층 (화장동)
	등록번호	206211-0074050
	연 락 처	061-683-4568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대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산96-1번지 외 54필지				
건설 예정지	산132-1	산132-3	산133	313	301-1
	산96-1	275	산91	산90	산86
	산135	832	832-1	832-2	832-4
	산133-4	833-1	833	304	산134
	303	830-6	297	302	301
	298	산85	294-2	294-1	299
	300	산87	산86-1	291	산89
	281	282	836-1	산95-1	837
	832-3	840	289	산133-2	296
	294	293	292	산92	290
	산96	284-2	280	297	1187
사업지 면적	63,734.00㎡		지목	전, 임, 묘지, 구거 등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과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자료는 홍보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토지확보현황(사용권원 및 소유권) 및 계획

	구 분	면적(㎡)	백분율(%)	비 고
토지확보현황 (사용권원 및 소유권)	총사업 면적	63,734	100	
	확 보	32,342	50.75	
	미확보	30,857	48.42	
	합 계	63,734	100	

※국공유지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80%이상, 사업계획승인신청 전 95%이상 확보예정.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현황은 홍보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구 분	비 고
주택건설예정 세대수	공동주택(모집)	304세대
	지하 1층, 지상4층	
건설예정기간	착공 후 21개월	

6.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구 분	구 분	비 고
조합원모집 세대수	84A Type	70	총 280세대
	84B Type	70	
	84C Type	70	
	84D Type	70	
조합원모집기간	2021. 05. 10 ~ 2021. 12. 中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50% 이상 시 조합설립인가 접수예정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세대에 추가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7.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주택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면적 (㎡)	계약면적 (㎡)
84A	84.5500	26.3113	110.8613	49.4222	160.2834
84B	84.5500	26.3113	110.8613	49.4222	160.2834
84C	84.5500	26.3113	110.8613	49.4222	160.2834
84D	84.5500	26.3113	110.8613	49.4222	160.2834

※상기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동수, 층수, 세대수, 용적률,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측량성과 등의 사유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제 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구비 서류

① 인감증명서(일반용)7부	확약서 및 조합가입신청서 제출용 등
② 주민등록등본 2부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③ 주민등록초본 2부	구 주소 표기 및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④ 가족관계증명서 2부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 2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⑥ 인감도장, 제출용 일반도장	조합원 가입자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용 일반도장
⑦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공개
⑧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2부, 신분증사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⑨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⑩ 주택보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유 시 계약서 사본 1부	주택보유여부 확인용

가입 신청 계약

조합원 가입신청 및 계약일시	2021. 05. 10 ~ 2021. 12 中
조합원 가입신청 및 계약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상기 내용 이 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가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9. 조합원 당첨자 별표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발표일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발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여수시 박람회길1)
발표방법	개별 안내문자 및 서면 안내

- 조합원 당첨자 발표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조합원 자격요건 유, 무 결과에 따라 발표됨.
-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총3회 실시합니다.
- 이 중 최초 자격요건심사 시기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적격자 판정을 받은 조합원을 당첨자로 확인하며, 조합원 부적격 받은 경우 소명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 조합원 당첨자로 확인합니다.
-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별 안내 문자 및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10.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① 인·허가청으로부터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조합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기타사유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납부할 전체 분담금 중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납부할 전체 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 및 연체료,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해당 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며,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총회의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완료시점(입주)까지 조합원자격(무주택, 세대주)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명기간 내(인·허가청 부적격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해당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조합원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조합은 해당조합원이 납부할 전체 분담금 중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납부 할 전체 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 및 연체료,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해당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조합원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조합원 분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부적합한 전매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에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4)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5) 조합원이 조합에서 진행하는 조합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조합원이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이권개입, 청탁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7) 조합 또는 시공사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8) 기타 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관청의 조합인가 신청 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10) 조합원 사망 또는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입하고 조합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1) 당 사업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업진행에 방해 등 협의가 인정될 때
12) 상기 10)내용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⑥ 조합원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조합에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⑦ 해약 및 탈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환급계좌에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조합원의 환불금은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됩니다.

⑧ 상기 ②,④,⑤,⑦항에 의해 조합원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당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며, 연체료, 중도금 및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함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조합원은 조합이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불 조합원의 감원을 필요로 할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해당 조합원은 탈퇴처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해당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을"이 납부한 분담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하며, 지급시기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조합원은 납부원금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조합 및 시공사, 조합업무대행사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⑩ 조합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의 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체 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 할 수 있습니다.

⑪ 조합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본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실행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 환급 처리하고, 중도금 대출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변제할 때까지 해당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택조합 신청 철회 및 신청금 반환은 주택법 제11조6에 따르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 후 신청금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1.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 일정표 〈단위:천원〉

주택형	타입 구분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1차 (계약 후 10일이내)	계약금 2차 (설립인가 후 15일 이내)	중도금(50%) 1차	2차	3차	4차	5차	잔 금 입주 지정일
84A	1층	436,122,860	23,000,000	45,000,000	43,612,286	43,612,286	43,612,286	43,612,286	43,612,286	50,061,430
84B	2층	395,874,860	17,577,200	39,577,200	39,577,200	39,577,200	39,577,200	39,577,200	39,577,200	40,731,600
84C	3층	419,252,240	23,000,000	45,000,000	41,925,224	41,925,224	41,925,224	41,925,224	41,925,224	41,626,120
84D	4층	452,792,240	23,000,000	45,000,000	45,279,224	45,279,224	45,279,224	45,279,224	45,279,224	58,396,120

업무추진비 : 2,200만원 VAT포함. (계약시 납부) 상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음.

※"갑"은 "을"에게 납부일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및 15일 전에 조합 게시판(홈페이지, 카페 등)에 납부일을 공지하기로 한다. 납부일 경과 후에는 가입계약서상의 연체 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단,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납부일 최고 20일 전에 변경일정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자가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자는 중도금 대출은행선정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분담금 및 일정표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있습니다. (금액 변경 시 개별정산 예정)
※상기 분담금은 업무대행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분담금은 개별 분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소유권이전 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조합원 개별부담입니다.
※상기 분담금은 사업계획승인 시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공원, 완충녹지 조성공사비, 기타 기반시설 조성비 등), 관계법령의 변경 및 강화된 건축기준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각종 분담금, 조합의 요청 또는 합의에 의해 추가 되는 시설의 분담금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발생 시 별도 일괄 부담(징수)하여 처리합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담금 중 중도금(50%)에 대한 은행권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포함되며,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한다.
※발코니 확장비용 (1,600만원 (VAT 포함) 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기 중도금(50%)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조합원과 은행권 대출 부적격(개인 신용등급 및 대출금융기관의 규정)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조합원의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2. 조합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주체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 백인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자금관리계획	코리아신탁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후 자금일체를 신탁사에서 관리
자금관리계좌	조합창립총회 후 자금관리계좌를 안내함

※위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원을 수납하지 않으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고, 그 외의 입금 모두는 무효임.

13.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및 15일 전에 조합 게시판(홈페이지, 카페 등)에 통보 합니다.
- 납입기일 경과 후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업무대행비 포함)은 연 15%의 연체요율 적용, 중도금은 추후 공급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합니다.
- 지정된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 이외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계약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따른 이자지급은 없습니다.)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자란 표시내용
조합원 가입신청금	농협 은행	301-0292-0667-11	코리아 신탁(주)	계약자 관리번호
조합원 분담금	농협 은행	301-0292-0649-91	코리아 신탁(주)	계약자 관리번호
업무 대행비	농협 은행	301-0292-0671-31	코리아 신탁(주)	계약자 관리번호
입금 시 주의사항	조합원 가입신청금, 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상기 각각의 지정계좌에 무통장 입금한다. 입금 의뢰인란에 반드시 조합원 성명 및 조합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입금자명 : 김철수0123			

14.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배정 시기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에서 협의 후 안내 (2021년 12월 예정)
배정 방법	추후 공지되는 장소에서 당첨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

- 단, 추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동·호수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 및 배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5.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사용검사예정일

구 분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공사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1.08	2021.12	2022.10	2024.06

※상기 예정일은 사업진행 및 인·허가과정,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 가입시 권리 · 의무 사항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 1세대 공급권리
- 조합원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 개별 납부 의무
-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 행사 권리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1) 조합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각종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의 납부 및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 총회 등에서 정한 금액 등의 납부 의무.

■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

-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추후 관련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 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04월 0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 통합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조합원 개별분담금)이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전 협의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도면, 구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및 동선 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의해 등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조감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배치 구조 등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고,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 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합 및 시공사의 동의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조합 및 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가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제외)을 보장하고 조합원 가입자는 기 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제외)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 및 청구 할 수 없으며 조합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모집문의	061)682-4568	
사업주체	시행자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인강주택산업개발㈜
	자금관리 신탁사	코리아신탁㈜

가칭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